9/18

공고

기 안 용 지

공고제 20 호

분류기호 문서번호	415	(전화번호 318)
처리기간		도시계획국장 제2부시장 시장
시행일자	9. 15	9/8
보존년한		
보조기관	도시계획과장 / 가로계획계장	협조: 종합계획계장 / 시민과장 / 문서관리계장
기안책임자	송 ○ 석	72. 9. 7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 조	발신
제목	서울 도시계획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 결정	

결재 1972. 9. 14 제2부시장

1972. 9. 15 서울특별시

제1안

수 신 내부결재

1. 당시 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(고속버스 터미널)에 대해서 별첨과 같이 건설부고시 제366호(72. 8. 23) 및 건설부고시 제393호(72. 9. 1)로 시설결정 되었으므로

2. 도시계획법 제12조 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코저 합니다.

0201-1-8A 190mm × 268mm 백상지 40g/m²

1969. 11. 10 승인

10-1 9.

중고안심사	1972.9.14	제 219호
상 자 자	법제처장	법무과장

제2안

공고안

서울특별시공고제 호

서울도시계획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 결정

당시 관내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건설부고시 제366호 (72.8.23) 및 건설부고시 제393호 (72.9.1)로 결정고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규정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(시민열람실)

(관계도서 및 비치)

1972. 9. 15.

서울특별시장

1.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 결정조서

명칭	위치	면적 (m^2)	비고
서울역 광장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	중구 봉래동1가	4,554	건설부고시 366호 (72.8.23)
동대문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	종로구 종로6가	9,020	〃
서울역 동부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	중구 남대문로5가	6,788	건설부고시 393호 (72.9.1)

첨부 건설부 고시문 사본 각 1매

제3안

수신 종로구청장. 중구청장 　 발신 시장

제목 송 건

1. 귀구 관내에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(고속버스 터미널)이 건설부고시 제366호 (72.8.23) 및 건설부고시 제393호

(72. 9. 1)로 시보 결정 고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5항
에 의거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공고하였기 통보하니 도면 열람후
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 도시계획 업무 처리에 참고 하도록 할것.

첨 부 공고문사본 및 도면

제4안

수 신 공보실장 발 신 과 장

제 목 [illegible] 시보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시보게재 주문 : 공 고.

나. 시보게재 건명 :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 결정.

다. 법 적 근 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5항

첨 부 공고안사본

제5안

수 신 시민과장 발 신 과 장

제 목 동 건

1.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건설부 고시 제366호 (72. 8.23) 및 393호(72. 9. 1)로 결정고시 되었기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공고하여 통보하오니 ~~관계~~ 민원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제6안

수 신 운수행정과장 발 신 과 장

제 목 동 건

1. 당지에서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관보에 제 366호(72.8.23) 및 393호(72.9.1)로 게재되었사오니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이를 공고하였기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공고문사본 끝

건 설 부

도시 415-1106 (70-4028) 1972. 8. 22.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제목 서울 도시계획 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 결정

1. 도시 415-1106 (72. 6. 20)로 신청한 위 건중 별첨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과 같이 그 일부를 결정하고 고시하였으니 관계 도서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할 것이며

2. 서울역 한진제1 및 서울역 동부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는 서울역전 교통 혼잡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보류하였으니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며, 결정된 2개 지역의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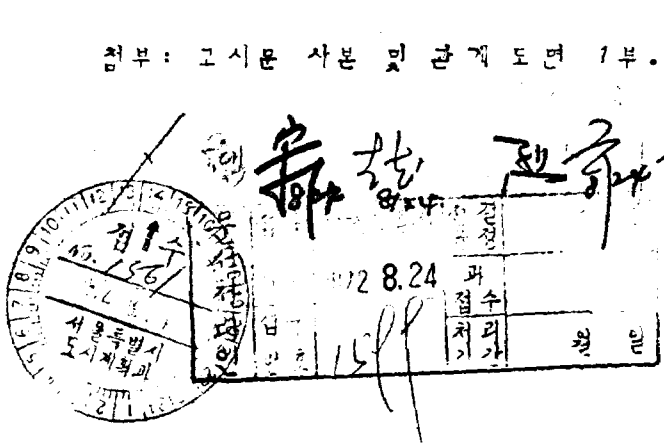

건 설 부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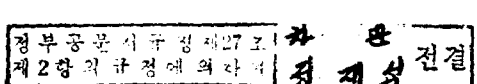

10-5

사본

건설부 [redacted] 시 제 36 호

서울 도시계획 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 도서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여 도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2. 8. 23.

건 설 부 장 관

1. 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 결정 조서

명 칭	위 치	면적(m²)
서울역 앞 고속여객자동차 정류장	중구 봉래동 1가	4,554
동대문 고속여객 자동차정류장	중로구 종로 6가	9,020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있음. 끝.

상왕십리동
신당동
청담동
옥수동

건 설 부

도시 415- 1617 (70-4028) 1972. 9. 1.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제목 서울도시계획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(서울역 동부)

1. 도시 415-1106 (72. 6. 20)로 신청한 위건중 이미 도' 415-14456 (72. 8. 23)로 2개지역은 결정된바 있고 보류한바 있는 2개지역중 1개지역(서울역 동부 정류장)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기본 및 관계도면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하였으니 관계인에게 도이거 하고 본 사업 시행에 편의를 기하기 바라며

2. 한편 제1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(557) 지역은 부결하였으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.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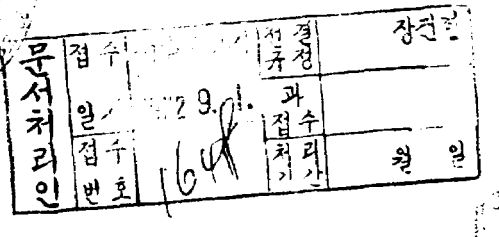

건 설 부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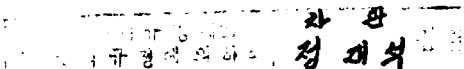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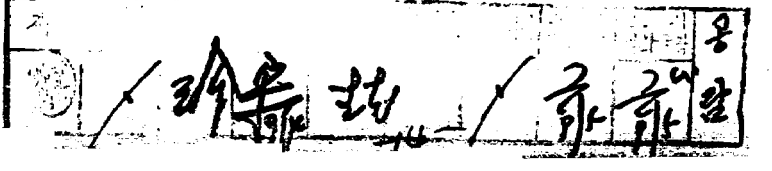

10-5

건설부 기 제 3A 호

서울도시계획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을 다음 조서와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2. 9. 1.

건 설 부 장 관

1.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

명 칭	위 치	면적(M²)
서울역 동부 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	중구 남대문로 5가	6,788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. 끝.

10-9

8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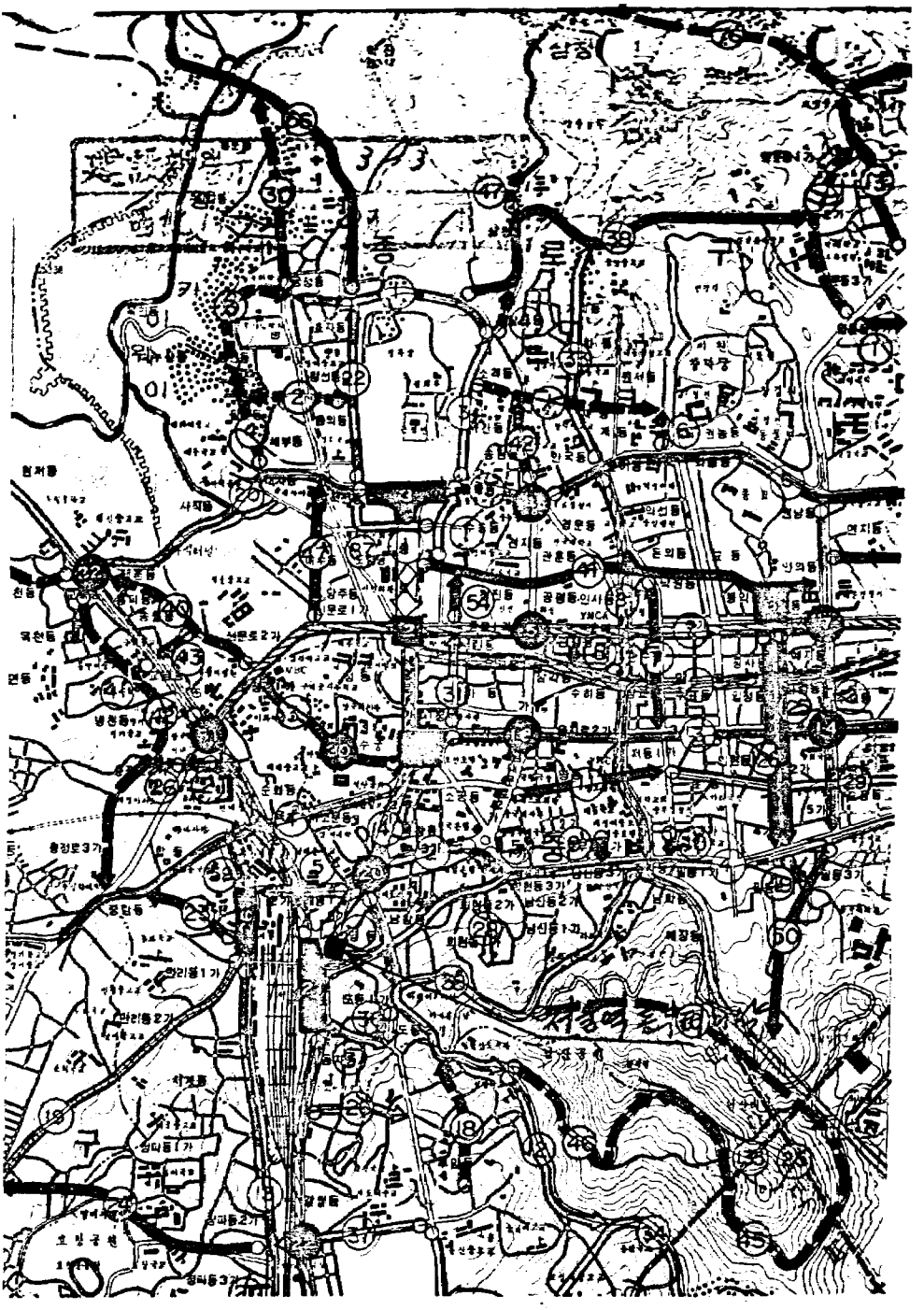

10-10 -16-